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고심'...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무게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여부 오늘 결정 특검법은 내년 1월 1일까지... 내란 일반특검법 수용 분위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 반대 쟁점 법안들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고, 현재 공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이른바 19일 국회법·국회중언급 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애초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보류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더욱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내란 일반특검'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일 수 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는 점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이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규정된 정원에 미달한 6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성을 놓고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도 "결국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직 수습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상태다.

한 대행은 또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줄곧 강조해온 만큼 속고를 거쳐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게 총리실 안팎의 전망이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저출생대응수석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크리스마스일(seal) 증정식에 참석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1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교체된 박지원 위원장의 주제로 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국힘 추천자 "헌법 취지에 부합"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헌법 111조 2·3항을 인용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 조항

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도 "원론적인 입장에서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권 불행사로 인해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6인 체제에도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가치분 결정과 관련해서 마·조 후보자 모두 '심리 가능' 취지의 견해를 밝혔지만, 이후 선고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마 후보자는 "가치분 결정은 심리정족수에 관한 것"이라면서 "최근 현재 소장 권한대행은 언론을 통해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일각에서는 가치분 결정에 따라 6인의 재판관의 모두 동의하는 경우 종국결정의 선고 가능하다는 하나, 현재 결정의 정당성 확보나 사건의 중요도 등에 비춰 현재가 완전체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마 후보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109조를 들어 "대통령 탄핵심판도 헌법재판의 하나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국가 안전보장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도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 34조를 인용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

에서 원칙적으로는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역시 같은 법 조항을 인용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여당 추천의 조 후보자 역시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23·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위위원장 정점식→박지원 교체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 요구로 열렸고,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맡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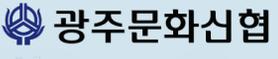
여야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요구대로 빨리 인사청문회를 하고, 우리가 합의된다면 청문보고서를 국회의 장에게 제출하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추천해 청문회를 통과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게 관례"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위원장 교체 및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 뒤 37분 만에 산회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